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나54467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단3380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시흥시 E 건물 신축공사를 F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도급 주었고, 소외회사는 2017. 3. 3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대금 6,160만 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판넬공사를 위하여 2017. 3. 3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에게 직접 판넬대금 5,456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는 1,500만 원 상당의 판넬자재를 위 공사 현장에 입고시켰으나, 나머지 판넬자재를 입고시키거나 판넬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판넬공사에 관한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초과하여 수령한 판넬대금 3,950만 원(= 5,456만 원 - 1,500만 원)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판넬공사에 관한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서 계약상 권리·의무 관계를 갖는 당사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 계약 당사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더라도,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강성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명의를 제공했다는 것만으로 소외회사와의 관계에서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을 1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또는 소외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계약 당사자 지위에 기한 실질적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권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등 참조).